「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」

# 보조금 업무처리지침(안)

2026. 1.

기후에너지환경부

# 목 차

1. 사업 목적 및 개요 ..... 1

2. 보조금 집행 기준 ..... 2

3.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선정 ..... 5

4. 보조금 집행 절차 ..... 9

5. 보조사업 관리 ..... 13

# 1. 사업목적 및 개요

## 가. 목적

○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

## 나. 관련 규정

○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

○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

## 다. 2026년 사업내용

○ 사업명 : 전기이륜차 보급사업

○ 사업비 : 총 16,000백만원(국비 기준)

## 라. 운영주체별 역할

○ 기후에너지환경부(이하 기후부)

-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·개정
-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예산 배정
- 사업운영 지도·점검, 사업 운영실태·시행결과 평가 등
- 국고보조금 총괄 정산(보조금 적정 집행, 지방비 확보 여부 등)
- 구매보조사업 참여 대상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 선정

○ 한국환경공단

- 전기이륜차 보조금 시스템 운영
- 전기이륜차 보조금 시스템 관련 콜센터 운영
- 보조금 지원 차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) 등록
- 구매보조사업 참여 대상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 선정평가 운영

○ 지방자치단체

- 보조금 교부신청

-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(자치단체 보조사업)

## 2. 보조금 집행 기준

### 가. 보조금 지원 대상

○ 개인, 법인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(중앙행정기관 제외)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로 선정된 제작·수입사가 판매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하는 경우

○ 다만, ①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거나, ②연구기관이 시험·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

### 나.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

①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해 판매·운행이 가능한 전기이륜차

② 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

③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로 선정된 제작·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이륜차

### 다.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

○ 전기이륜차의 규모·유형*·성능(연비, 배터리용량, 등판능력)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며,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별표 1, 별표2와 같음

* 전기이륜차의 규모·유형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 별표 1에 따라 분류

| 구분 | 유형 | 일반형 | | | | 기타형 | 공유형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규모 | 경형 | 소형 | 중형 | 대형 | | 경형 | 소형 |
| **최대지원액**(만원)<br>(국비+지방비) | | 140 | 230 | 270 | 300 | 270 | 98 | 160 |

※ 단, 기타형 중에서 이륜자동차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5에 따라 기입한 주 사용 목적이 '화물운반용'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[연비보조금(60만원)+주행거리보조금(195만원)+등판보조금(45만원)]으로 함

※ 화물운반용 이륜자동차는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바닥 면적이 0.5㎡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,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5에 따른 하대옵셋트 수치가 "-"가 아닌 차량이어야 함

○ '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'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규모·유형, 성능별 보조금의 70% 지급. 다만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함

- 1년 이상 배터리 구독(공유) 서비스에 가입하였음을 증빙해야 함

- 배터리를 소유하고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대여하는 구독(공유) 서비스 제공자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작사는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공동 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

- 배터리 구독(공유)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(가입자, 배터리 교환 인프라 설치 현황 등)을 기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시 공유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

○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·폐차*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·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

*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(확인증·폐차사진 등)를 제출받아 확인

○ 소상공인,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 계층), 농업인*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
*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및「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또는 증명서)를 제출받아 확인

○ 배달 사용 목적*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
*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(6개월 이상 유지) 확인 증서, 시간제 유상운송보험(6개월 이상 유지)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(3개월 이상 유지)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

※ 신규로 배달 목적의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유상운송보험(시간제 포함)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

※ 소상공인, 취약계층,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

○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 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50대 50으로 하여 최대지원액(국비+지방비) 이내에서 산정

※ 단, 관내 소재업체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'추가지원'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최대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

○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*에 대한 보증수리 기간을 설정하고 부품의 수리·교체 비용 보장을 위한 보험**(공제)에 가입한 제작·수입사 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

* 모터, 제어기, 차체, 충전기(1년 또는 1만km), 배터리(2년 또는 2만km, SOC 65% 기준)

** 보험(공제) 담보범위, 가입금액, 보상기간, 보상조건 등은 별표 3와 같으며 제작·수입사는 해당보험(공제) 증서 및 증권을 기후부에 제출해야 함

○ 판매 지역(광역지자체 단위)에 A/S 대리점을 지정하고, 예비부품(모터, 배터리, 제어기)을 10대분 이상 확보한 제작·수입사 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가능

※ 별표 4에 따라 1.15일까지 기후부에 증빙서류 제출 필요

- 다만, 제작·수입사간 공동 A/S망을 구축·활용하고 있음을 기후부에 증빙하는 경우 상기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

○ 보증수리, 응대서비스 운영, 고장신고 조치 등 사후관리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응을 소홀히 한*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※ 구매자의 반복적인 A/S 신청에도 콜센터 응대가 되지 않아 서비스 불만 민원이 최근 1년간 3회 이상 제기(청원24, 국민신문고, 불편민원신고센터 등)된 경우 등

◇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에 게재

## 3.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선정

### 가. 선정절차

○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매년 3.31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에 공개하며, 구매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작·수입사는 해당 기준에 따른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매년 5.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

○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작·수입사가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검토*하고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해 원칙적으로 6.30일까지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를 선정·공고하여야 함

* 서류 및 자료 검토과정에서 기후부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| | |
|---|---|
| 평가기준 마련·공개(~3월) | 기후에너지환경부 |
| ↓ | |
| 제작·수입사 준비 및 자료제출<br>(~5월) | 제작·수입사 → 한국환경공단 |
| ↓ | |
|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<br>선정평가위원회 구성 | 한국환경공단 |
| ↓ | |
|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평가 | 구매보조사업 참여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 |
| ↓ | |
|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<br>선정 결과 공고(~6월) | 기후에너지환경부 |

## 나. 신청자격 ※ 5.31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기준 만족 필요

○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이륜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·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있는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

○ 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하여 판매·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있는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

○ 전기이륜차 유지보수, 민원에 대한 응대 등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

## 다. 공모 신청서류 제출 ※ 추후 공개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필요

구매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작·수입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(별도 공모절차 진행)

㉮ 공모 지원신청서 (별지 제5호 서식)

㉯ 신청제안서

㉰ 사업자등록증 1부

㉱ 법인 등기부등본 1부 (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)

㉲ 법인 인감증명서 1부 (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)

㉳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

㉴ 전기이륜차 인증 및 보급대상 평가 서류

㉵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인력 재직(경력)증명서, 4대보험 납입증명서

㉶ 기타 제안서 정성·정량 평가를 위한 증빙 서류

## 라. 신청서 평가 ※ 세부 평가기준 별도 공고

○ 전기이륜차 관련 전문가 7인* 이상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의 사업능력, 기술개발 노력, 사후관리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선정

* 기후부, 관계 공공기관 및 학계·연구계·시민사회 등 전기이륜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

- (평가 배점) 정량적·정성적 평가 100점

※ 평가점수는 최종 계산 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

○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

※ 점수는 최종계산 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, 평가결과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

○ 선정된 업체에는 선정결과를 문서로 통보하고,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에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제작·수입사로 등록

## 마. 제재사항

○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가 기후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시정 또는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차년도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선정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○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가 본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에서 제외되며, 차년도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선정 시 제한될 수 있음

○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모집 공고일 현재 전기이륜차 및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위반 사실로 조사·내사·수사·고발 등이 진행 중이거나, 재판 또는 행정심판 중인 경우는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○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결과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를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음

○ 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처벌(처분)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## 4. 보조금 집행 절차

### 가. 보조금 집행 체계

< 민간부문 >

| | |
|---|---|
| 보급사업 공고 | 지방자치단체 |
| ↓ | |
|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| 구매자 ↔ 이륜차 제작·수입사 |
| ↓ | |
|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| 구매자 또는 이륜차 제작·수입사<br>→ 지방자치단체 |
| ↓ | |
|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·통보 | 지방자치단체<br>※ 출고·등록순, 추첨,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|
| ↓ | |
| 차량 출고 및 신고<br>(2개월 이내 원칙) | 이륜차 제작·수입사 → 구매자 |
| ↓ | |
|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<br>(출고·신고 후 10일 이내) | 이륜차 제작.수입사 → 지방자치단체 |
| ↓ | |
| 보조금 지급(14일 이내 원칙) | 지방자치단체 → 이륜차 제작·수입사 |

○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·수입사에 납부하고, 이륜차 제작·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(국비+지방비 보조금)로부터 보조금 수령

○ 상기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, 절차를 미준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가능

< 공공부문 >

| | |
|---|---|
| 조달청(나라장터) 구매계약 | 구매기관 → 조달청 |
| ↓ | |
| 납 품 | 검사/검수(구매기관) |
| ↓ | |
|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| 구매기관 → 조달청 |
| ↓ | |
|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| 구매기관 → 지방자치단체 |
| ↓ | |
| 보조금 집행 | 지방자치단체 → 구매기관 |

○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

○ 구매기관(공공기관)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

## 나. 보조금 집행 절차

### < 민간부문 >

① (보급사업 공고)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)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함

*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 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함

-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,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함

※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

※ 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되, 지자체에서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일로 삼기 곤란한 특수한 상황임을 기후부에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

※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공고내용에 추가 가능

※ 렌트·리스 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

② (구매지원 신청·접수)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로 선정된 제작·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호의 신청서를 작성(관련 첨부서류 포함)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

③ (지원대상자 검토·선정)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·등록순, ②추첨,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, 보조금 신청 순번은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부여 가능

-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제조·수입사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함

-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례의 보완 기회(1차: 7일, 2차: 5일)를 제공해야 하며, 2차 보완 이후에도 적정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 가능

-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 계층), 상이·독립유공자, 소상공인, 다자녀 가구,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등에게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(지원 물량의 5% 이내)

※ 이 경우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등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

-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차량이 출고(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·제출)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

※ 다만, 대외여건 악화나 제작·수입사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 한시적 연장 가능

④ (보조금 집행) 구매지원 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제조·수입사는 전기이륜차 사용 신고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*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

* 거주지 증빙, 출고증빙(세금계산서), 전기이륜차 신고필증, 최소자부담 증빙 등

-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집행절차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)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, 불가피하게 동 시스템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기후부 승인을 득해야 함

-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기관 구매 지원 시 본인 확인을 위한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, 수량 제한 및 사업목적 증빙서류 제출 요구 등 추가 조건 설정 가능

**< 공공부문 >**

① (차량 구매)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2호의 신청서와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

② (보조금 집행)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

## 5. 보조사업 관리

### 가. 관리대장 작성

○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집행실적(별지 제3호서식)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부에 보고해야 함(필요시 수시)

○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완료보고(별지 제4호서식)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부에 보고해야 함

### 나. 제작·수입사 현장관리

○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·수입사가 적정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 확인하고,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, 미이행 시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

### 다. 의무운행기간

○ 전기이륜차 사용 폐지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차량의 최초 신고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*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**에 따라 사용 폐지 신고를 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함

*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

**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별표 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기준

- 다만,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폐지 신고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폐지를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*

* 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,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차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 회수 가능

○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

<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(%) >

1.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

| 전기차 사용기간 | 6개월 미만 |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|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|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|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|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|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|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수 요율 | 70% | 65% | 60% | 55% | 50% | 40% | 30% | 20% |

2. 그 밖의 경우

| 전기차 사용기간 | 3개월 미만 |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|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|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|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|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|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|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|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회수 요율 | 70% | 65% | 60% | 55% | 50% | 40% | 30% | 20% | 0% |

※ 2022.6.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로서 개정된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시행일('24.5.13.)까지 말소되지 않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적용

○ 규모·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%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(공유)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(소유권 포기)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(공유)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% 환수

○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부에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,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국비 환수액을 반납해야 함

**라.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**(목적 외 사용금지 등)

○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관련 규정, 기후부가 설정한 교부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, 다른 용도로 집행해서는 안됨

- 또한, 전기이륜차 구매자 또는 구매자 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는 제작·수입사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(구매자 명의 도용, 교부목적 외

용도사용 등)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

○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*이 발견되는 즉시 기후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, 부정수급이 확인된 시점에 보조금(국비+지방비+이자)을 즉시 환수해야 함

*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나 배터리 구독(공유) 서비스 제공자가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제작차 인증받은 내용 및 보급대상 평가받은 내용대로 차량을 판매하지 않거나, 배터리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

○ 기후부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전기이륜차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제작·수입사 등에 대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

○ 지방자치단체는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과 자체 편성한 지방비 보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해야 함

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6년 1월 00일부터 시행한다

② (적용례) ①에도 불구하고 2.가 및 2.나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요건 중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한 이후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

[별표]

1. 2026년 전기이륜차(일체형) 보조금 산출방식
2. 2026년 전기이륜차(공유형) 보조금 산출방식
3. 보험(공제) 조건
4. 사후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조건

[별지 서식]

1.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
2.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
3.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분기보고
4.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완료보고
5. 공모 지원신청서

〔별표 1〕

# 2026년 전기이륜차(일체형) 보조금 산출방식

□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규모·유형, 성능*(연비, 주행거리, 등판능력)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,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

* 전기이륜차의 성능은 한국환경공단이 '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'에 따라 실시한 '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'를 적용

**성능보조금**[**연비보조금**(규모별금액 × 연비계수) + **주행거리보조금**(규모별금액 × 주행거리계수) + **등판보조금**(규모별금액 × 등판계수)] x **성능향상계수** + **혁신기술보조금** + **시설투자보조금** + **연구개발투자보조금**

○ 연비, 주행거리 및 등판보조금은 규모(경형, 소형, 중형, 대형)·유형(일반형, 기타형)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, 부문별 보조금 합계는 규모·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

(단위 : 만원)

| 부문 | 일반형 | | | | 기타형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경형 | 소형 | 중형 | 대형 | |
| 연비(20%) | 28 | 52 | 54 | 60 | 54 |
| 주행거리(65%) | 91 | 169 | 175.5 | 195 | 175.5 |
| 등판(15%) | 21 | 39 | 40.5 | 45 | 40.5 |
| **보조금 상한** | 140 | 230 | 270 | 300 | 270 |

※ 단, 기타형 중에서 이륜자동차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5에 따라 기입한 주 사용목적이 '화물운반용'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(연비보조금(60만원)+주행거리보조금(195만원)+등판보조금(45만원))으로 함

※ 화물운반용 이륜자동차는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바닥면적이 0.5㎡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,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5에 따른 하대옵셋트 수치가 "-"가 아닌 차량이어야 함

○ 연비계수*는 기준가중연비 대비 보급 대상 차량의 가중연비 비율을 말함

* 연비계수 = 가중연비 ÷ 기준가중연비

- 가중연비는 해당 차량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함

※ 가중연비 = (상온연비×0.75) + (저온연비×0.25)

※ 상온(저온)연비 = 1 ÷ 상온(저온)소비율

- 기준 가중연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

(단위 : km/kWh)

| 구분 | 일반형 | | | | 기타형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경형 | 소형 | 중형 | 대형 | |
| 기준가중연비 | 26.9 | 28.5 | 29.7 | 29.7 | 15.4 |

○ 주행거리계수는 보급대상 차량의 가중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

- (경형) $^{(70km\ 이상)}$ 0.0111 × 주행거리 + 0.223, 90km 이상 1.22
  $^{(70km\ 미만)}$ 0.03889 × 주행거리 - 1.7222, 50km 미만 0
- (소형) $^{(90km\ 이상)}$ 0.00588 × 주행거리 + 0.4708, 120km 이상 1.2
  $^{(90km\ 미만)}$ 0.02059 × 주행거리 - 0.8529 50km 미만 0
- (중형) $^{(90km\ 이상)}$ 0.00571 × 주행거리 + 0.486, 130km 이상 1.25
  $^{(90km\ 미만)}$ 0.02 × 주행거리 - 0.8, 50km 미만 0
- (기타형) 0.01714 × 주행거리 - 0.02857
  70km 이상 1.2, 40km 미만 0
- 가중주행거리 = (상온주행거리 × 0.75) + (저온주행거리 × 0.25)

○ 등판계수*는 기준가중등판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등판 비율에 공차중량에 따른 차등계수**를 적용한 값을 말함

* 등판계수 = (가중등판 ÷ 기준가중등판) × 차등계수

** [**경형**] (공차중량 86~95kg) 등판성능보조금×1.0 / (~85kg) 등판성능보조금×0.9 / (96kg~) 등판성능보조금×1.1
[**소·중·대형**] (공차중량 100~119kg) 등판성능보조금×1.0 / (~99kg) 등판성능보조금×0.9 / (120kg~) 등판성능보조금×1.1
[**기타형**] (공차중량 100~130kg) 등판성능보조금×1.0 / (~99kg) 등판성능보조금×0.9 / (131kg~) 등판성능보조금×1.1

- 가중등판은 해당 차량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등판능력을 말함

* 가중등판 = [(상온등판×0.75) + (저온등판×0.25)]

- 기준가중등판은 다음과 같이 적용

(단위 : %)

| 구분 | 일반형 | | | | 기타형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경형 | 소형 | 중형 | 대형 | |
| 기준가중등판 | 59.8 | 76.5 | 61.1 | 61.1 | 68.0 |

○ 성능향상계수는 전기이륜차 시스템 전반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능의 적용 여부에 따른 계수를 말함

- 차량제어장치(VCU*) 탑재 시 계수 1, 미탑재 시 계수 0.7 적용

* VCU(Vehicle Control Unit) 전기이륜차의 안전기능 통합제어, 주행거리 최적화, 토크 최적화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

○ 혁신기술을 적용한 전기이륜차에 대해 규모·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30만원 추가 지원

- (고속충전) 충전속도 3㎾ 이상 차량에 25만원 추가 지원

- (배터리 정보) 소유주에게 배터리 안전정보*를 제공(차체 디스플레이, 사용자 앱 등)하는 차량에 5만원 추가 지원

* 배터리 충전정보(SOC), 배터리 열화정보(SOH), 배터리 온도 정보 모두 제공

○ 전기이륜차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제작사의 전기이륜차에 대해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비 중 (차대)동력계 및 인력, 전기이륜차 저온 주행거리 측정을 위한 챔버를 갖춘 제작사 차량의 경우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60만원 지원

○ 전기이륜차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제작사의 전기이륜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보조금 지원

- 최근 5년간('21~'25) 전기이륜차 연구·기술개발 총 투자비용 20억원 이상 + 최근 3년간 전기이륜차 관련 정부과제(주관기관 참여시만 인정) 1건 이상 수행한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

□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(국비+지방비)의 일정비율(최소 자부담금*)을 반드시 부담(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·수입사에 지불)해야 하며,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**

* 최소 자부담금 = 보조금(국비+지방비) × 일정비율(일반경형, 기타형 경형: 50% / 소·중형, 기타형 소형: 45% / 대형, 기타형 화물: 40%)

**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

※ 관내 소재업체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'추가지원'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

※ 소상공인,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 계층), 농업인에 한하여 초기 보급 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

〔별표 2〕

# 2026년 전기이륜차(공유형) 보조금 산출방식

□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규모, 성능*(연비, 주행거리, 등판능력)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,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

* 전기이륜차의 성능은 한국환경공단이 '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'에 따라 실시한 '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'를 적용

**성능보조금[연비보조금**(규모별금액 × 연비계수) + **주행거리보조금**(규모별금액 × 주행거리계수) + **등판보조금**(규모별금액 × 등판계수)] + **혁신기술보조금** + **시설투자보조금** + **연구개발투자보조금**

○ 연비, 주행거리 및 등판보조금은 규모(경형, 소형)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, 부문별 보조금 합계는 규모별 보조금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

(단위 : 만원)

| 부문 | 경형 | 소형 |
|---|---|---|
| 연비(45%) | 44 | 82 |
| 주행거리(10%) | 10 | 18 |
| 등판(45%) | 44 | 82 |
| **보조금 상한** | **98** | **160** |

○ 연비계수*는 기준가중연비 대비 보급 대상 차량의 가중연비 비율을 말함

* 연비계수 = 가중연비 ÷ 기준가중연비

- 가중연비는 해당 차량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함

※ 가중연비 = (상온연비×0.75) + (저온연비×0.25)

※ 상온(저온)연비 = 1 ÷ 상온(저온)소비율

- 기준 가중연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

(단위 : km/kWh)

| 구분 | 일반형 | |
|---|---|---|
| | 경형 | 소형 |
| 기준가중연비 | 26.9 | 28.5 |

○ 주행거리계수는 보급대상 차량의 가중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

- (경·소형) 0.05710 × 주행거리 - 2.426
  70㎞ 이상 1.6, 40㎞ 미만 0
- 가중주행거리 = (상온주행거리 × 0.75) + (저온주행거리 × 0.25)

○ 등판계수*는 기준가중등판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등판 비율에 공차중량에 따른 차등계수**를 적용한 값을 말함

* 등판계수 = (가중등판 ÷ 기준가중등판) × 차등계수

** [**경형**] (공차중량 86~95kg) 등판성능보조금×1.0 / (~85kg) 등판성능보조금×0.9 / (96kg~) 등판성능보조금×1.1
[**소형**] (공차중량 100~119kg) 등판성능보조금×1.0 / (~99kg) 등판성능보조금×0.9 / (120kg~) 등판성능보조금×1.1

- 가중등판은 해당 차량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등판능력을 말함

* 가중등판 = [(상온등판×0.75) + (저온등판×0.25)]

- 기준가중등판은 다음과 같이 적용

(단위 : %)

| 구분 | 일반형 | |
|---|---|---|
| | 경형 | 소형 |
| 기준가중등판 | 59.8 | 76.5 |

○ 혁신기술을 적용한 전기이륜차에 대해 규모·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5만원 추가 지원

- (배터리 정보) 소유주에게 배터리 안전정보*를 제공(차체 디스플레이, 사용자 앱 등)하는 차량에 5만원 추가 지원

* 배터리 충전정보(SOC), 배터리 열화정보(SOH), 배터리 온도 정보 모두 제공

○ 전기이륜차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제작사의 전기이륜차에 대해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비 중 (차대)동력계 및 인력, 전기이륜차 저온 주행거리 측정을 위한 챔버를 갖춘 제작사의 경우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60만원 지원

○ 전기이륜차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 제작·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보조금 지원

- 최근 5년간('21~'25) 전기이륜차 연구·기술개발 총 투자비용 20억원 이상 + 최근 3년간 전기이륜차 관련 정부과제(주관기관 참여시만 인정) 1건 이상 수행한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

○ KS 표준 공유형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20만원을 차감하여 지급

※ '27년부터 KS 표준 공유형 배터리 미탑재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급 계획

□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(국비+지방비)의 일정비율(최소 자부담금*)을 반드시 부담(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·수입사에 지불)해야 하며,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**

* 최소 자부담금 = 보조금(국비+지방비) × 일정비율(경형: 50% / 소형: 45%)

**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조금에서 차감

※ 관내 소재업체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'추가지원'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최소 자부담금 산정에서 제외

※ 소상공인,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 계층), 농업인에 한하여 초기 보급 여건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기후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

〔별표 3〕

# 보험(공제) 조건

○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는 부품의 수리·교체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(공제) 증서 또는 증권을 기후부에 의무 제출하여야 함

- 보험(공제) 담보범위 :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가 보증수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(도산 또는 보증수리 신청을 한 날로부터 15일 경과시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) 발생하는 부품의 수리·교체 비용을 담보
- 보험(공제) 가입금액 : 해당 전기이륜차 판매가격의 100%를 기준으로 산정
- 보상기간 : 해당 전기이륜차 신고일로부터 2년
- 보상조건 : 보험사(공제조합)는 피보험자(피공제자, 피해자 포함)가 보험(공제)금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(영업일) 이내로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하여야 함

〔별표 4〕

# 사후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조건

○ 전기이륜차 제작·수입사는 판매 지역(광역지자체 단위)에 대해 A/S 대리점을 지정하고, 예비부품(모터, 배터리, 제어기) 10대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포함한 아래의 사항들을 기후부에 2026년 1월 15일까지 증빙해야 함

- (A/S 대리점) 판매지역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별 최소 1개 이상의 A/S 대리점(이륜차 정비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지 최소 2년 이상)을 지정*하고 판매하는 이륜차의 정비·수리 관련 교육을 해당 A/S대리점에 실시했음을 증빙**해야 함

* A/S 대리점 현황(상호명, 주소 등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업체-A/S 대리점 계약서 등 제출 필요

** 교육실시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

※ 사업 추진 중 지정한 A/S 대리점이 없는 광역지자체에 판매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 판매 시작 한 달 전까지 해당 광역지자체에 A/S 대리점을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

- (부품 확보 증빙) 본사 또는 공장 등 업체가 관리하기 용이한 부품 보관 장소를 자율적으로 1개 이상 지정하고 아래의 항목을 표기한 부품 입고 사진을 분기별로 제출 필요

※ 보관장소, 촬영일시, 부품명, 부품수량(10개 이상)

○ 단, 업체들이 공동 A/S망을 구축·활용함을 기후부에 2026년 1월 15일까지 증빙하는 경우 A/S 대리점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함

- 공동 A/S망을 활용하는 경우 모든 광역지자체별로 A/S대리점을 지정해 전국 A/S망을 구축하고 긴급출동서비스 등 사후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, 업체별로 부품 확보 증빙 제출 필요

- 공동 A/S망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협회는 공동 A/S망 구축확인서 및 업체별 이용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대리 증빙 가능

- 공동 A/S망 구축확인서 제출 시 전국 A/S망 구축 증빙자료*, 전산망(사이트) 주소, 콜센터 현황** 등이 포함되어야 함

* 지자체별 A/S 대리점 현황(상호명, 주소 등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업체-A/S 대리점 계약서 등 제출 필요

** 전화번호, 주소, 인력 현황 등

※ 공동 A/S망을 운영하는 경우 분기별로 운영 실적(상담건수, 수리건수 등)을 제출해야 함

○ 만일 업체별 판매 개시 시점이 상기 사항 증빙 제출 기한('26년 1월 15일)보다 늦을 경우, 증빙 제출 기한까지 판매 개시 시점을 공문으로 제출하고 해당 시점 도래 한달전까지 상기 사항들을 증빙(제출)해야 함

(별지 제1호 서식)

#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

(전기이륜차 보급사업)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신청기관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사업기간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신청<br>내역</td><td rowspan="2">전년이월</td><td>금액</td><td></td></tr>
<tr><td>물량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금년계획</td><td>금액</td><td></td></tr>
<tr><td>물량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금회신청</td><td>금액</td><td></td></tr>
<tr><td>물량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신청누계</td><td>금액</td><td></td></tr>
<tr><td>물량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<br><br>년 월 일<br>○ ○ ○ (관인)<br><br>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※ 첨부서류<br>1.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.<br>2.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</td></tr>
</table>

(별지 제2호 서식)

#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

| 성 명(기관명) | | 대표자 | |
|---|---|---|---|
| 생년월일(법인번호) | | 전화번호 | |

| 구입신청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제작사 | 모델명 | 수량 | 구입예정일 | 보조금 신청액 |
| | | | | |

|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(해당 시)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이륜자동차번호 | 차명 | 배기량 | 연식 |
| | | | |

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 : (인)

OOO시장 귀하

##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위탁 · 제공 동의서

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)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

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, 동의 여부를 체크,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.

**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[필수]**

**[수집 ·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**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
**[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]**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
**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**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,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**2.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[필수]**

**[위탁·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]**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
**[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]** (위탁) 전기이륜차 제작사 (제공) 기후부, 한국환경공단,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
**[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]** (전기이륜차 제작사)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
(기후부, 한국환경공단,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)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
**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**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본 "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"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인)

##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

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「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」 보조금 업무처리지침'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,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.

1.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
2.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
3.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(공유)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

년 월 일

성 명 : (인)

(별지 제3호 서식)

#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분기보고

(전기이륜차 보급사업)

## □ 보급대수

(단위 : 대)

| 구분 | 총계 | | 1/4분기 | | 2/4분기 | | 3/4분기 | | 4/4분기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 |
| 전기이륜차 | | | | | | | | | | |

〔비고〕 차량별 보급 대수 : 000EV 0대, 00EV 0대, 0EV 0대

## □ 국고보조금 집행실적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| 금액 |
|---|---|---|
| 분기별 교부액(a) | | |
| 전년도 이월액(b) | | |
| 보조금 현액(c＝a＋b) | | |
| 집행액 누계 | 계 | |
| | 1/4분기 | |
| | 2/4분기 | |
| | 3/4분기 | |
| | 4/4분기 | |
| 집행잔액 | | |
| 다음연도 이월액 | | |

## □ 특기사항(부진사유 등)

○

20 . . .

작성자 : 직급 성명 (인)

확인자 : 직급 성명 (인)

(별지 제4호 서식)

#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완료보고

(전기이륜차 보급사업)

## □ 보급대수

(단위 : 대)

| 구분 | 총계 | | 1/4분기 | | 2/4분기 | | 3/4분기 | | 4/4분기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 | 계획 | 실적 |
| 전기이륜차 | | | | | | | | | | |

## □ 국고보조금 집행실적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| 금액 |
|---|---|---|
| 당해 연도 교부액(a) | | |
| 전년도 이월액(b) | | |
| 보조금현액(c=a+b) | | |
| 집행액 누계 | 계 | |
| | 1/4분기 | |
| | 2/4분기 | |
| | 3/4분기 | |
| | 4/4분기 | |
| 집행잔액 | | |
| 이월액 | | |
| 불용액 | | |
| 이·불용 사유 | | |

가. 예산집행 증빙서류

나. 전기이륜차 구매자·기관 리스트

다.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0 . . .

작성자 : 직급 성명 (인)

확인자 : 직급 성명 (인)

(별지 제5호 서식)

# 공모 지원신청서

|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공모 지원신청서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사 업 건 명 | 2026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| | |
| 업 체 명 | | 대 표 자 | |
| 주 소 | | | |
| 연 락 처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법인등록번호 | | | |

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 참여 업체 선정 공모에 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인)

**한국환경공단 이사장** 귀하

[붙임서류] 1. 신청제안서
2. 사업자등록증 1부
3. 법인등기부등본 1부
4.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※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
5.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
6. 전기이륜차 인증 및 보급대상 평가 서류
7.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인력 재직(경력)증명서, 4대보험 납입증명서
8. 기타 제안서 정성·정량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



기후에너지환경부